

재해대책본부의 조직을 현 기구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재해대책본부의 조직변경(안 제2조제3항)

- 총괄조정관 : 기획예산실장 → 경영기획실장
- 통제관 : 건설국장 → 건설기획국장
- 재해별 주무과장 중 : 도로운영과장 → 도로관리과장

3. 검토의견(건설전문위원 안석수)

○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해대책본부의 총괄조정관을 “기획예산실장”에서 “경영기획실장”으로, 통제관을 “건설국장”에서 “건설기획국장”으로, 설해관련 주무과장을 “도로운영과장”에서 “도로관리과장”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과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른 후속절차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기획관리실장”을 “경영기획실장”으로 “건설국장”을 “건설기획국장”으로, “도로운영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하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57
------	-----

2003년 3월 25일
건설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안일자 : 2003년 2월 28일

다. 회부일자 : 2003년 3월 3일

다. 상정일자 : 2003년 3월 18일(제14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위원회)

2. 제안설명 요지 및 주요골자(제안설명자 : 건설기획국장 김영걸)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2003.1.10) 및 동 조례시행규칙 개정(2003.1.15)에 따라 직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하천법,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 수임기관 직명 변경(안 제3조제1항)
 - 한강관리사업소장 →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

-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한 인용조문 정비(안 제1조, 제4조 및 제6조)

3. 검토의견(건설전문위원 안석수)

-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점용료 등의 징수 권한 수임 기관의 직명을 “한강관리사업소장”에서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으로 변경하고,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와 감면의 근거 규정인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 점용료 등의 징수권한 수임기관의 직명을 변경하고 점용료 등의 분할납부와 감면의 근거 규정인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2003.1.10)과 동조례 시행 규칙 개정(2003.1.15), 하천법, 지방세법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것으로 조례정비 차원에서 별도 문제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38조제4항”을 “제38조제5항”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한강관리사업소장”을 “한강시민공원사업소장”으로 한다.

제4조 중 “지방세법 제41조”를 “지방세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제6조 각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하천법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한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수정안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건물가격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따라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지하도상가 관리조례 개정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지하도상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지하도상가”라 함은 지하도상가 구역에 있는 상가와 지하보도를 말한다.
2. “상가”라 함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점포와 점포의 운영에 필요한 기계실·공조실·화장실·휴게실·관리실 등의 부대시설 및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부수적 시설물을 포함한 것을 말